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표지 등의 제거 및 이행 실적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제18조제6항이 삭제(법률 제1389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표지등의 제거와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 관련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서식 삭제(안 제37조제4항, 별지 제28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의 제출 방법) ① 법 제24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자는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및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최초로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업현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인증취소 제품명 및 인증번호		인증취소일	
업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E-mail:	
이행 실적 (첨부자료)	환경표지등 제거 이행 내역 및 실적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환경표지등 인증 취소 제품 도안 제거 이행실적 및 입증 자료 1부
 2. 이행실적 부진 사유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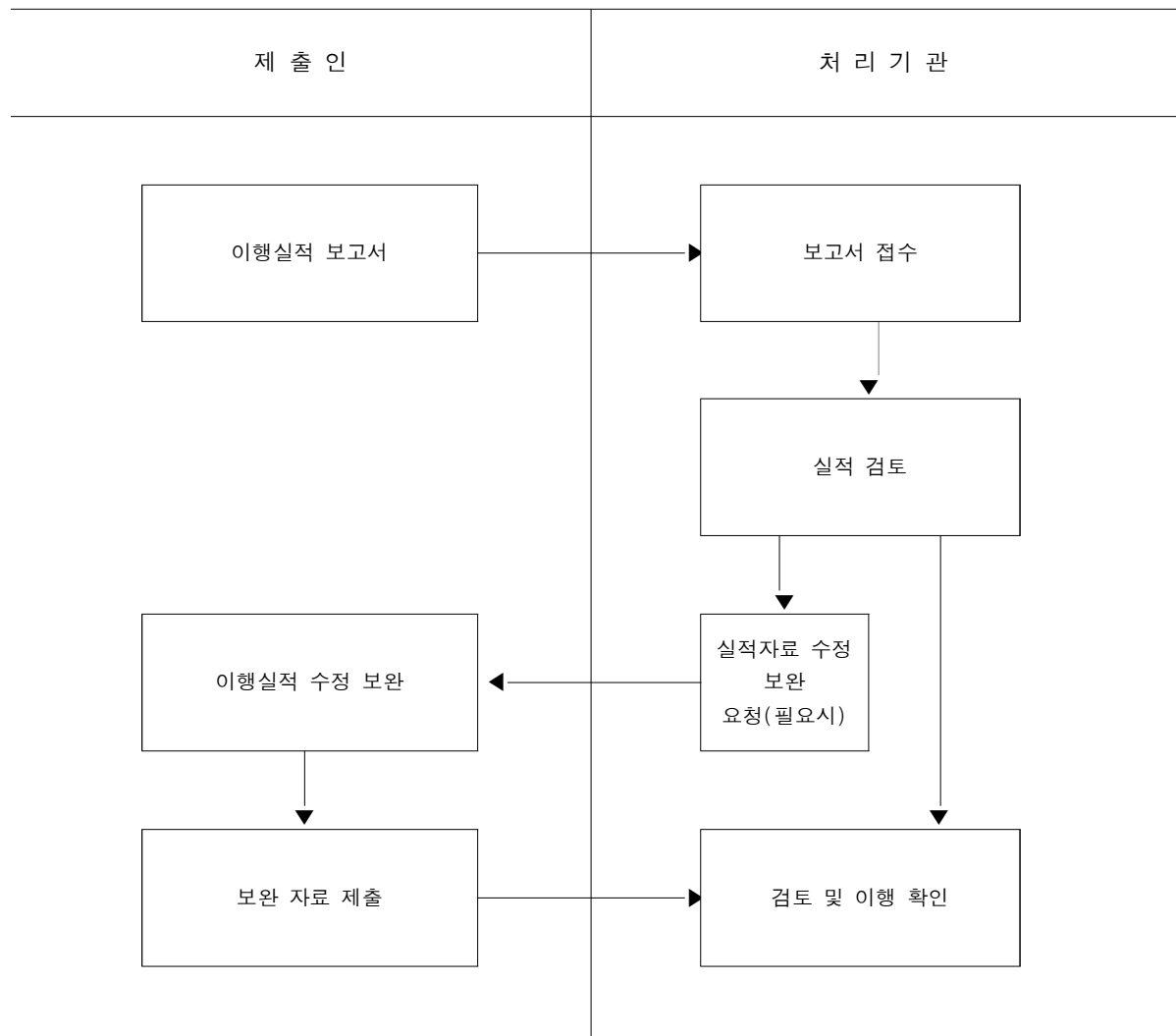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이행실적 세부 사항은 제출일까지 진행 및 조치가 완료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2. 이행 방법은 취소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환경표지등 및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제거한 모든 활동에 대한 이행결과를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시행규칙 개정안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 ③ (생 략) <u>④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44조의2(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의 제출 방법) ① 법 제24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및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u> <u>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6735